

발행인 : 서울특별시

편집인 : 공보관

731-6111~3

# 서울시보

제 1939 호 1995. 12. 5.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 고 시
  - 제 1995-322 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용도지구(도시설계)지정 ..... 3
- 공 고
  - 제 1995-330 호 소방시설설계업공사감리업등록공고 ..... 3
  - 제 1995-332 호 도시계획사업(노량진공원부분조성)완료 ..... 4
- 구 고 시
  - 제 1995-4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강북) ..... 5
  - 제 1995-63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서대문) ..... 10
  - 제 1995-64 호 주택건설등록업체행정처분고시(서대문) ..... 10
  - 제 1995-39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지적승인(서초) ..... 10
  - 제 1995-54 호 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고시(강동) ..... 11
  - 제 1995-53 호 주택건설사업자전폐업신고처리고시(강동) ..... 11
  - 제 1995-33 호 도시계획시설(새푸라어린이공원)조성계획결정에따른  
지적승인(용산) ..... 11

(이면계속)

공																			
람																			

## ☼ 서울특별시

0794

제 1995-3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용산) ..... 13

제 1995-7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성동) ..... 14

제 1995-42 호 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계획사업)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광진) ..... 14

제 1995-49 호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및지적승인(중랑) ..... 15

제 1995-99 호 도시계획시설(청량근린공원)지적승인가고시(성북) ..... 15

제 1995-4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변경인가(강서) ..... 17

제 1995-6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서초) ..... 18

제 1995-70 호 하천점용허가(강남) ..... 19

● 구 공 고

제 1995-162 호 주택개발재개발산천구역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를위한  
공람공고(용산) ..... 19

제 1995-169 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실시계획공람공고(강북) ..... 20

제 1995-395 호 도시공원시설(윤봉길기념관)관리위탁공고(서초) ..... 21

제 1995-322 호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공고(강남) ..... 21

제 1995-147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금천) ..... 22

●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 1995-124 호 하천점용승인 ..... 22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고시

제 1994-14 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도로교통고시중개정 ..... 23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 1995-94 호 시의회부의안전공고 ..... 26

● 입 찰 공 고

제 1995-5 호 공사입찰공고(구로소방서) ..... 26

제 1995-6 호 공사입찰공고(구로소방서) ..... 27

● 공 문 시 행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강북구) ..... 28

● 인 사 발 령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95-322호**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및용도지구**  
**(도시설계)지정**

1.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

계)지정을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마포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및 강남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5. 12. 5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 지정 조사

순번	위치	면적 (㎡)	용도지역 변경내역		용도지구 지정 및 면적	비고
			기정	변경		
1	마포구 합정동 414, 416 일대	51,400 3,600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일반상업 지역 일반상업 지역	-	합정지구 중심
2	마포구 성산동 590, 592 일대	54,000	일반상업 지역	유통상업 지역	-	성산자동차 정비단지(자 동차정비 용 도에 한함)
3	강남구 청담동 47 일대	44,300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도시설계 지구 44,300㎡	청담생활권 중심
4	강남구 대치동 937 일대	44,200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도시설계 지구 44,200㎡	대치생활권 중심
5	강남구 개포동 158 일대	16,700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도시설계 지구 16,700㎡	개포생활권 중심

다. 도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마포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및 강남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1995-330호**  
**소방시설의설계업및공사감리업등록공고**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

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995. 12. 5  
서울특별시

상호(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종(등급 및 분야)
(주)토포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서초구 양재동 2-14 상화빌딩 4층	전세기의 1	제95-241호	95. 11. 7	○ 소방시설설계업 및 공사감리업(1급)
(주)종합 건축사무소 담종합	광진구 자양동 228-1	맹준호	제95-242호	95. 11. 7	○ 소방시설설계업 및 공사감리업(3급기계·전기분야)
조은 건축사 사무소	동작구 노량진동 240-25	조용선	제95-243호	95. 11. 7	○ 소방시설설계업(3급기계·전기분야)
기술사 사무소 주호 엔지니어링	송파구 카락본동 79-7	손주호	제95-244호	95. 11. 15	○ 소방시설설계업(2급전기분야)
동우 설비 기술사 사무소	강남구 논현동 97-7	신현곤	제95-245호	95. 11. 15	○ 소방시설설계업(3급기계분야)
(주)한주 종합건축사 사무소	강남구 삼성동 114-11	김영철	제95-246호	95. 11. 15	○ 소방공사감리업(2급기계·전기분야)
(주)에스 에이치 엔지니어링	강남구 역삼동 640-11	이성모	제95-247호	95. 11. 15	○ 소방시설설계업 및 공사감리업(1급)
(주)무영 종합건축사 사무소	강남구 역삼동 604-1	안길원 외 1	제95-248호	95. 11. 15	○ 소방공사감리업(2급기계·전기분야)
(주)화인 건축사무소	서초구 서초동 1423-1 쌍방울 개발빌딩 2층	문영조	제95-249호	95. 11. 15	○ 소방공사감리업(2급기계·전기분야)
기술사사무소 선우 엔지니어링	서초구 서초동 1571-4 문화빌딩 3층	김영춘	제95-250호	95. 11. 24	○ 소방시설설계업(3급 기계분야)

●서울특별시공고제1995-332호

도시계획사업(노량진공원부분조성)완료  
 1. 서울시고시 제1992-309호(92. 9. 30) 및 서울시고시 제1995-274호(95. 9. 29)로 도시계획사업 인가 및 변경인가된 노량진 근린공원내 공군본부 이적지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2. 도시계획법 제57조의2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5. 12. 5

서울특별시

-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3-176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 사업의 명칭: 노량진근린공원(공군본부이적지) 조성공사  
 다. 사업 규모  
 ○ 사업면적: 78,514.6㎡  
 ○ 사업내역: 배드민턴장, 축구장, 테니스장

스장, 관리사무실, 화장실, 공군상징  
 탐, 기타 조정시설 등  
 라. 사업시행기간: 92.9.30~95.10.31

**구 고 시**

●강북구고시제1995-46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1. 도봉구고시 제94-4호(94.12.5) 및 강

가. 사업개요

북구고시 제95-31호(95.9.27)로 실시  
 계획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도  
 시계획법 제25조(실시계획인가) 및 제26  
 조(실시계획인가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  
 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  
 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토목과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12. 5

강 북 구 청 장

구분	사업시행	사업종류 및 사업명	규 모	결정고시	지적고시	사업기간
당 초	미아5동 447-2 ~447-33	도시계획사업(도로) 미아5동 443 주변 도로개설공사	B= 6m  L=113m	서고 354호  (90.10.24)	도고제 92- 26호  (92.7.8)	1995.9.27 ~ 1996.12.31
	미아6동 1265-97 ~645-60	도시계획사업(도로) 미아6동 645-1265간 도로개설공사	B= 6m  L=140m	서고 105호  (83.2'24)	서고제 174 호  (83.3.24)	1994.2.2 ~ 1995.12.31
변 경	미아5동 447-2 ~450-10	도시계획사업(도로) 미아5동 443 주변 도로개설공사	B= 6m  L=130m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도시계획사업(도로) 미아6동 645-1265간 도로개설공사	B= 6m  L=140m	변경없음	변경없음	1995.11. ~ 1996.12.31

나.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지)조서  
 : 별첨조서(변경분)

마.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강북구청 토  
 목과에 비치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4조제3항의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토목과  
 (901-640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변경분)

사업명 : 미아6동 645-1265간 도로개설공사

연 번	당 초						변 경 후						비 고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주 소	성 명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미아동 645-138	대	45	45	영등포구 신길동 457-2	유태준	미아동 645-138	대	45	45	영등포구 신길동 457-2	유태준	
2	미아동 670-22	도	2	2	미아동 322-6	김영래	미아동 670-22	도	2	2	미아동 322-6	김영래	
3	미아동 670-68	도	10	10	"	"	미아동 670-22	도	10	10	"	"	
4	미아동 645-140	대	7	7	미아동 645-59	엄덕중	미아동 645-140	대	7	7	성북구 길음 1270-398	서귀우	
5	미아동 645-141	대	49	49	미아동 산 94	박원순	미아동 645-141	대	45	45	미아동 645-62	박원순	
6	미아동 645-	대	354	354	미아동 693-	김형식	미아동 645-	대	281	281	수유동 155-3	김형식	
7	미아동 645-142	대	5	5	미아동 645-45	이경호	미아동 645-142	대	5	5	미아동 1265-87	박승우	
8	미아동 645-143	대	3	3	미아동 455-25	박양원	미아동 645-143	대	3	3	미아동 455-25	박양원	
9	미아동 645-145	대	49	49	성북구 정릉동 396-19	이상일	미아동 645-145	대	49	49	미아동 645-41	이상일	
10	미아동 645-144	대	5	5	미아동 455-25	박양원	미아동 645-144	대	5	5	미아동 455-25	박양원	

31-6

제 1939 호

시

현

1995. 12. 5

31-7

연 번	당				초		번						비 고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주 소	성 명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1	미아동 645-146	대	49	49	미아동 645-43	허철욱	미아동 645-146	대	49	49	미아동 645-43	허철욱	
12	미아동 645-147	대	82	82	미아동 645-38	문창남	미아동 645-147	대	82	82	미아동 645-38	문창남	
13	미아동 645-151	대	58	58	미아동 837-1485	이충용	미아동 645-151	대	58	58	미아동 645-29	이충용	
14	미아동 645-150	대	22	22	미아동 645-39	이 선	미아동 645-150	대	22	22	미아동 645-39	이 선	
15	미아동 1265-323	도	8	8		도봉구	미아동 1265-323	도	8	8	미아동 645-45	도봉구	
16	미아동 645-148	대	56	56	미아동 645-28	박재창	미아동 645-148	대	56	56	미아동 645-28	박재창	
17	미아동 645-152	대	20	20	미아동 645-30	이두준	미아동 645-152	대	20	20	미아동 645-30	이두준	
18	미아동 645-153	대	10	10	미아동 637-54	이정경	미아동 645-153	대	23	23	미아동 637-54	이정경	
19	미아동 1265-417	대	10	10		서울시	미아동 1265-417	대	10	10		서울시	
20	미아동 1265-418	대	11	11		서울시	미아동 1265-418	대	11	11		서울시	
21	미아동 1265-419	대	83	83	미아동 1265-97	정상규	미아동 1265-419	대	83	83	미아동 1265-97	정상규	
22							미아동 1265-416	대	1	1	미아동 1265-207	신태윤	

제1939호

시

군

1995.12.5

물 건 조 서(변경분)

사업명 : 미아동 645~1265간 도로개설공사

31-8

연 번	당 초					변 경 후						비 고	
	소재지 자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미아동 1265-419	건 물 화장실		47 7	미아동 1265-97	정상규	미아동 1265-97	건 물 화장실		47 7	미아동 1265-97	정상규	
2	미아동 1265-206	건 물		4	미아동 1265-206	김춘산	미아동 1265-206	건 물		4	미아동 1265-206	김춘산	
3	미아동 1265-418	건 물 화장실		14 4		미 상 미 상	미아동 1265-96	건 물 화장실		14 4	미아동 1265-96	이 정	
4	미아동 645-148	건 물 화장실		8 4	미아동 645-28	박재창	미아동 645-148	건 물 화장실		8 4	미아동 645-28	박재창	
5	미아동 645-152	건 물		16	미아동 645-30	이두준	미아동 645-30	건 물		16	미아동 645-30	이두준	
6	미아동 645-150	건 물		31	미아동 645-39	이 선	미아동 645-39	건 물		31	미아동 645-39	이 선	
7	미아동 645-151	건 물		39	미아동 837-1485	이충용	미아동 645-29	건 물		39	미아동 837-1485	이충용	
8	미아동 645-147	건 물 화장실		45 2	미아동 645-38	문창남	미아동 645-38	건 물 화장실		45 2	미아동 645-38	문창남	
9	미아동 645-146	건 물 화장실		5 1	미아동 645-43	허철욱	미아동 645-43	건 물 화장실		5 1	미아동 645-43	허철욱	

제 1939 호

스

보

1995. 12. 5



연 번	당 초						변 경 후						비 고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0	미아동 645-145	건 물 화장실		28 2	성북구 정릉동 396-19	이상익	미아동 645-41	건 물 화장실		28 2	성북구 정릉동 396-19	이상익	
11	미아동 645-142	건 물		1	미아동 645-45	이경호	미아동 645-45	건 물		1	미아동 645-45	이경호	
12	미아동 645-140	건 물 화장실		6	미아동 645-59	엄덕종							
13							미아동 645-60	담 장		22.5	영등포구 신길동 457-2	유태준	

31-9

제 1939 호

시

보

1995. 12. 5

<p>●서대문구고시제1995-6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5. 12. 5 서대문구청장</p> <p>1. 사업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홍제3동 27통 재건축조합 3. 시공자: (주)태영 4. 사업시행위치: 서대문구 홍제동 277-17의 18필지 5. 대지면적: 4,350.20㎡</p>		<p>6. 연면적: 26,524.93㎡ 7. 규모: 아파트 1개동 11~18층 214세대 및 복리시설</p> <p>●서대문구고시제1995-64호 주택건설등록업체행정처분고시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명령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5. 12. 5 서대문구청장</p>						
<p>○ 행정처분 업체현황</p>								
등록번호	대표자명	상 호	영업소재지	처분기간	처분일자	처분사유		
90-13-10	김찬근	회훈종합 건설(주)	서대문구 연희동 81-12	95. 11. 27 ~ 95. 12. 26	95. 11. 27	공사중지 명령위반		
<p>●서초구고시제1995-397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서초구 서초동 1494-6 일대 현황이 공원인 도로를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p>		<p>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초구청 도시정비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5. 12. 5 서초구청장</p>						
<p>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p>								
구분	시설의세분	등급	유별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결정	일반도로	소로	3	4~6	71	서초구 서초동 1494-1	서초구 서초동 1494-1	현황공원부분 폐지
변경	-	-	-	-	-	-	-	
<p>나. 도면: 서초구청 도시정비과, 지적과   비치도면과 같음.</p>								

●강동구고시제1995-54호

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고시

1. 강동구공고 제1995-153호(95. 10. 31)로 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조성)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바 있는 강동구 고덕2동 296 방죽근린공원에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소운동장 조성)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바. 사용할 토지 및 토지소유자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12. 5

강 동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강동구 고덕2동 296
- 나. 사업명: 근린공원 부분조성(소운동장)
- 다. 사업규모: 소운동장조성 2,350㎡(농구장 2면, 배구장 2면).
- 라. 사업시행자: 강동구청장
- 마. 사업착수 및 준공 연월일: 1995. 11. 28~1995. 12. 31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 고
1	강동구 고덕2동 296 (방죽근린공원)	공원	2,350	강동구	공원전체면적: 87,748.6㎡

●강동구고시제1995-53호

주택건설사업자진폐업신고처리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규정에 따라 자진폐업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가. 등록번호: 89-25-23
- 나. 주택건설사업자명: 진풍건설산업(주)
- 다. 영업소재지: 강동구 성내동 455-18
- 라. 등록말소 및 폐업신고사유: 자진폐업 등록증반납
- 마. 처분기준일: 1995. 11. 27

1995. 12. 5  
강 동 구 청 장

●용산구고시제1995-33호

도시계획시설(새푸리어린이공원) 조성  
계획결정에따른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324호(95. 11. 24)호로 결정된 용산구 이촌1동 301-101 일대 도시계획시설(새푸리어린이공원) 조성 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조서는 용산구청 공원녹지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5. 12. 5

용 산 구 청 장

- 가. 도시계획시설(새푸리어린이공원) 조성 계획 결정에 따른 지적승인조서: 별첨 시설조서와 같습니다.
- 나. 관계도면: 용산구청 공원녹지과와 이촌1동사무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가. 도시계획시설(새주리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1) 총합표									
○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301-101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231.50	137.50				12			
기 반 시 설	소 계	137.50	137.50						
	도 로	9	9						
	광 장	128.50	128.50						
조 경 시 설	(47.00)	(47.00)				1			
휴 양 시 설	(4.80)	(4.80)				6			
유 회 시 설	(18.64)	(18.64)				3			
운 동 시 설	(3.50)	(3.50)				1			
관 리 시 설						1			
녹 지 및 기타	94.00	(94.00)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합 계			231.50	137.50			12	
기 반 시 설	계			137.50	137.50				
	도 로 가		전구역	9.00	9.00				
	광 장 나			128.50	128.50				
조 경 시 설	계			(47.00)	(47.00)			1	
	파 고 라	①		(47.00)	(47.00)			1	
휴 양 시 설	계			(4.80)	(4.80)			6	
	벤 치	②	파고라내·외	(4.80)	(4.80)			6	파고라내 4기 그 네 옆 2기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유회 시설	계			(18.64)	(18.64)			3	
	회전무대 ③		파고라옆	(3.14)	(3.14)			1	
	사 소 ④		그 네 옆	(11.00)	(11.00)			1	
운동 시설	계			(3.50)	(3.50)			1	
	철 봉 ⑥		파고라옆	(3.50)	(3.50)			1	
관리 시설	계							1	
	휴 지 통 ⑦							1	
녹지 및 기타				94.00	(94.00)				부지면적의 40.6%

(3)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유 별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종 점	기 점	비 고
신설		계		2.5	9.0				
신설			4.65	1.5	7.0	산책로	외부도로	중심광장	
			2	1	2	산책로	101동 아파트	중심광장	

●용산구고시제1995-3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 용산구 이태원동 252-1지상 재건축조합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건설촉  
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동  
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12. 5

용 산 구 청 장

1. 사업명: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삼화연립재건축조합(이태원동  
252-1)

3. 위치: 용산구 이태원동 252-1

4. 대지면적: 1,315.0㎡

5.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5층 1동 25  
세대

6. 총건축연면적: 3,067.70㎡

7. 시행기간: 1995. 12~1996. 12

8. 도시계획결정사항: 없음.

9. 의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4항 각호에

관한 사항

10. 관계도면: 생략(용산구 주택과에 보관)

●성동구고시제1995-72호

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 1. 서울특별시 성동구고시 제1994-78호(94. 11. 12)로 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 실시계획 인가되고 성동구고시 제1995-4호(95. 1. 25) 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12. 5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898-2~하왕십리동 888-6간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확장)

다. 명칭: 성동구 하왕십리동 898 주변 도로개설공사(변경없음)

라. 사업규모: 폭 6m, 연장 175m(변경없음)

마.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인

라. 사업시행 규모: 부대시설 용도변경

가일로부터 1997. 12. 31까지(변경)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조서 참조(변경 없음)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조서 참조(변경 없음)

●광진구고시제1995-42호

시의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계획  
사업)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1. 서울시고시 제339호(85. 5. 22)에 의거 시외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되고 성동구공고 제161호(94. 7. 1)로 사업완료된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1 일대의 동서울종합터미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광진구 교통행정과(450-1483)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1995. 12. 5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1 의 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시의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

다. 사업의 명칭: 동서울종합터미널 일부 시설 변경

기존 세차장: 546㎡	세차장(계: 765㎡)를 건축물로 건축
세차장 증설: 219㎡	
주차장 392㎡에 자동세차기 1대이설 및 1대신설(2대)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1  
 · 성명 : 한진건설(주) 대표이사 안 용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착수연월일 : 95. 11  
 · 준공예정일 : 96. 5. 31  
 사. 수용 및 사용할 토지전물의 소재지, 지번·지목·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 없음.  
 아. 관계도서 : 생략

●중랑구고시제1995-49호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420호(95. 12. 14)로 변경결정되고 중랑구고시 제1993-7호(95. 3. 23)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2.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도시정비과와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건설3부)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12. 5  
 중랑 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 분	시설세분	기능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도시철도 (지하철7호선)	면목정거장	중랑구 면목동 120 일대	4,470	중 68㎡
변 경	"	"	"	4,538	

○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도시정비과 (490-338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고시제1995-99호  
 도시계획시설(청량근린공원)지적승인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5-247호(95. 8. 26)로 도시계획시설(청량근린공원) 조성 계획결정 고시되어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및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12. 5  
 성북 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청량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지적승인내역

구 분	지 번	면 적	소 유 주	비 고
석관동	산 1-5	378,962	문화재관리국	
	산 1-77	3,273	재무부	
	233-1	45,448	문화재관리국	

구 분		지 반	면 적	소 유 주	비 고
성 북 구	석관동	233-2	3,739	문화재관리국	
		340-1	1,312	안기부	
		산 1-49	5,059	문화재관리국	
	상월곡동	산 7-4	23,563	산림청	
		산 7-14	72,450	산림청	
		산 8-10	8,968	서울특별시	
		산 8-18	45,514	서울특별시	
		산 8-19	383	서울특별시	
		산 8-20	409	서울특별시	
	하월곡동	산 5-5	4,165	산림청	
		산 5-57	172,298	산림청	
		산 5-10	1,253	산림청	
	소 계	15필지	766,796		
동 대 문 구	청량리동	산 1-1	56,594	산림청	
		산 1-183	8,374	한국개발연구원	
		산 1-192	24,050	과학기술처	
		산 4-1	3,570	산림청	
		산 4-2	1,190	산림청	
		산 5-5	18,873	산림청	
		산 5-8	1,190	산림청	
	회기동	산 4-50	17,911	재무부	
		산 4-96	1,094	과학기술처	
		산 4-97	81,918	산림청	
		산 4-101	3,005	산림청	
		산 4-102	16,445	농촌경제연구원	
		산 4-104	4,892	과학기술처	
		산 4-106	264	과학기술처	
산 4-108	959	과학기술처			



구 분	지 번	면 적	소 유 주	비 고
	산 4-109	1,368	과학기술처	
	산 4-110	1,167	과학기술처	
소 계	17필지	242,864		
총 계	32필지	1,009,660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공원녹지과(920-3395~7) 및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920-439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고시제1995-47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 변경인가

1. 강서구고시 제1994-24호(94. 4. 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강서구고시 제1994-58호(94. 10. 31)로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 인가후 강서구고시 제1994-61호(94. 11. 30)로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 변경인가되고, 강서구고시 제1994-70호(94. 12. 31)로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 변경 인가되

고, 강서구고시 제17호(95. 3. 31)로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 변경인가되고, 강서구고시 제1995-41호(95. 10. 31)로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 변경인가한 아래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에 대하여 일부 변경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토목과 600-6405~8, 건설관리과 600-6400~3).

1995. 12. 5

강 서 구 청 장

가. 변경인가 내용

1) 사업내용

구 분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 규모	사 업 시행자	사 업 시행지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도시계획 시설(도로)결정	지적증인	비 고
	종 류	명 칭							
당 초	도시계획 사업 (도로 및 하수도)	방화동 산 97-4 ~ 141간 도로 개설공사	B=6m L = 200m	서울특별 시 강서 구청장	방화동 산 97-4 ~141간	94. 3~ 96. 12	강서구고 시 제199 4-24호 (94.4.29)	강서구고 시 제199 4-24호 (94.4.29)	
변 경	"	"	"	"	"	"	"	"	누락물건 추가

2) 수용 또는 사용한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조서(변경 추가 물건조서)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3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조서(변경 추가 물건조서)

변경 추가 물건조서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실제이용 상황	소 유 자		비 고
					성명	주 소	
방화동 132-74	수목	사철나무 φ 20cm	2주	수목	유인용	방화동 산 99	
	수목	목련나무 φ 17cm	1주	수목	"	"	
	수목	감 나무 φ 12cm	1주	수목	"	"	
	수목	배 나무 φ 10cm	1주	수목	"	"	
	담장	함석담장	H=1.7m L=11.3m	담장	"	"	
방화동 132-72	수목	광황나무 L=3 H=0.3, W=1.0	14주	수목	강희석	방화동 132.	
	수목	감 나무 φ 20cm	2주	수목	권영택	"	
	수목	측백나무 φ 8cm	3주	수목	"	"	
방화동 131-5	건축물	천막/철주	B=1~4m L=16m	주차장 차 고	효신교 통(주)	방화동 131-3 (근저당철정 중구 남대문2가 10-1 (화곡동지점) 서울신탁은행)	

●서초구고시제1995-6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초구 반포동 19-3 일대 서울특별시고  
시 제1995-314호(95. 11. 17)로 도시계

획시설(도로) 변경결정된 반포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초구청 도시정비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한다.

1995. 12. 5  
서 초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시점	종점	비고
기정	광로	2	35	40	6,600	잠수교 (1-136)	서초동 (광3-19)	반포로 일부 구간 확장(B=40→44, L=210m)
변경	"	2	35	40~44	6,600	"	"	

나. 도면: 서초구청 도시정비과, 지적과 비치도면과 같음.

●강남구고시제1995-7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점용허가를 처리하였기 같은 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995. 12. 5  
강 남 구 청 장

허가 일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	점용기간	점용료	수 허 가 자	
					주 소	성 명
95.11	강남구 개포동 182	20	허가일로부터 7일	13,500	강남구 수서동 387 한국 지역난방공사 강남지점	이상태

구 공 고

●용산구공고제1995-162호  
주택개발재개발산천구역조합설립및사업 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9호(93. 12. 17)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81호(94.

11. 29)로 사업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71호(95. 9. 27)로 구역변경결정 및 사업계획 변경결정단 주택개발재개발 산천구역 토지 등의 소유자들로부터 주택 개발재개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개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들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5. 12. 5  
용 산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1995. 11. 25~1995. 12. 24(30일간)

나.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주택과, 산천구역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용산구 원효로3가 277-17)

다. 의견서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주택과.

라. 인가신청의 요지

- 1) 사업의 명칭: 산천구역 주택개발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6 외 712필지
- 3) 시행면적: 58,185.7㎡
- 4) 시행기간: 인가일로부터 39개월
- 5) 신청인: 산천구역 주택개발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대표 김정식
- 6) 시행계획: 아파트 17~20층 16개동.

가. 사업개요

1,5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강북구공고제1995-169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실시계획  
공람공고

1.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한 다음 도시계획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총무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시 의견서를 공고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및 사업명칭	규 모	결정고시일자	지적고시일자
미아동 87-141 일대	도시계획사업, 공용의청사 부지	572㎡	강북고제45호 (95. 11. 23)	강북고제45호 (95. 11. 23)

나.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장

다. 사업기간: 95. 11~96. 12. 31

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조서

마.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강북구청 총무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

바.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및 이해관계인: 별첨 토지조서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총무과 (901-6310~3)로 문의 바랍니다.

1995. 12. 5  
강 북 구 청 장

토 자 조 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미아동 87-141	잡종지	249	249	이복금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목현리 311 천용희 노원구 하계동 284 한선④ 4-1013		
2	미아동 87-189	잡종지	165	165	천덕주 강북구 미아동 87-54 천경희 패루국 리마시수리끼오 푸아 단매 822 천성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목현리 311-2		
3	미아동 87-190	잡종지	158	158	천정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목현리 311-2 천홍주 송파구 오금동 164 가락우창 ④ 3-1101		

●서초구공고제1995-395호

도시공원시설(윤봉길기념관) 관리  
위탁공고

89. 2. 15 우리구에 기부채납되어 서울시 고시 제611호(89. 7. 10)로 도시공원시설 무상사용 관리 위탁한 바 있으나, 95. 11. 24일자로 기간이 종료되기에
- 도시공원법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사용 계속 관리위탁하였기 동법 제6조3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5. 12. 5

서 초 구 청 장

가. 위탁위치: 서초구 양재동 236(양재시민의숲)

나. 위탁종류 및 명칭: 도시공원시설(윤봉길기념관) 관리위탁

다. 수탁자: 사단법인 매현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회장 이강훈

라. 위탁기간: 95. 11. 25~96. 11. 24(1년)

마. 위탁면적: 6,586㎡

바. 위탁시설:

- 전시장 1동 2,459.32㎡(지하 1층, 지상 3층)
- 주차장 1,500㎡
- 광 장 867㎡
- 도 로 309㎡
- 녹 지 2,015.9㎡

●강남구공고제1995-322호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공고

우리구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5. 12. 5

강 남 구 청 장

가. 처분내용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근거
라이프종합전선(주)	85-20-9	조현섭 이성규	강남구 논현동 238-5	영업정지 6월	95. 1. 27~ 95. 6. 26	주택건설촉진 법 7조

●금천구공고제 1995-147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

기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5. 12. 5

금 천 구 청 장

인가일자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상 호	소재지	대표자
95.11.27	설비(92-서울-12-319호)	한라종합개발(주)	금천구 시흥동 905	이민규	(주)인왕엔지니어링	서초구 서초동 1337-22	정인균

한강관리사업소고시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1995-124호

하천점용승인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변경승인하였기 같은  
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95. 12. 5

한강관리사업소장

승인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 면적 (㎡)	점용 목적	점용 기간	승인을 받은 자	
						성 명	주 소
95.11.28	송파구 잠실동 1-1선(한강) 둔치	하천	21	상수도관의 선축관교체를 위한 퇴수변 설치	95. 11. 29. 95. 12. 2 (4일간)	동부수 도사업 소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 동 142-1

경찰청고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고시

제1995-14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도로교통고시중 개정

도로교통법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제35조,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12. 5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교통안전과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본문 중 "다음과"를 "다음 각호와"로 하고, 제1호 중 "화물 및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로 하고, 제2호 중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삭제하고, 제3호 중 "천1호"를 "제1호"로 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차선"을 "차로"로 하고, 동조 본문 중 "편도5차선"을 "편도5차로"로 하며, "차선에"를 "차로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자동차의 도로별 속도제한) 법 제1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별 자동차의 속도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주차금지 장소) 법 제28조제6호 및

법 제2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금지장소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노면표시(규칙 제3조제2항 별표 1(이하 "별표1"이라 한다. 제6호 나목 일련번호 610, 611호) 또는 규제표지(별표1 제2호 나목 일련번호 214, 215호)로 주차를 금지한 곳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폭 5m 이하 도로에서는 주차를 금지하는 노면표시 또는 규제표지가 없더라도 특별히 주차를 허용하는 노면표시(별표1 제6호 나목 일련번호 701 내지 701-2호) 또는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 등 주차허용 시설이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는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승차제한)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승차정원은 2인 이하로 한다. 단, 눈 또는 비가 내리거나, 노면이 미끄러울 때에는 운전자 이외의 자를 승차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본문 중 "악거"를 "의하여"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5. 12. 1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제2조 관련)

제목 중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로 한다.

1. 제한내용 도표 중

○"3.5톤이상 화물자동차"를 "3.5톤이상 10톤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로 한다.

○"10톤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를 "10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로 한다.

○제한구역 중 "부도심권"을 삭제한다.

○"10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의 울림턱대로 제한시간 "07:00-22:00"를 "07:00-10:00"로 한다.

○2. 예외규정 다호 "가스온반탱크로리 화물자동차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를 제외한 10톤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하여 통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비고란 해당차종에 "일·공휴일 제외"를 추가한다.

○도표 아래에 단서난을 신설하고, "단, 도심권내 도로중 강변대로, 양화로, 연회로, 세검정길, 정릉길 일부구간도로에 대해서는 07:00-10:00까지만 고압가스 온반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한다."

도표아래 "(주)"를 "※ 비고"로 한다.

○가. 도심권의 "(1)시청기점 반경 5키로미터내와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반경 7키로미터"를 "시청기점 반경 5키로미터 내지 7키로미터"로 한다.

○구간도로는 "미아삼거리"를 "월곡사거리"로 하고 "중암동삼거리-(중략)-성수대교북단"을 삭제하고, "남중삼거리-홍파사거리-계기사거리-마장사거리-도선사거리-행당사거리-용봉삼거리-성수교-삼표사거리-용비교(용비교-한강대교북단의 도시고속도로를 포함한다.)"로 한다.

○"(2)고압가스 탱크로리 화물자동차(이하 생략)"를 삭제하고, "나. 강변대로, 양화로, 연회로, 세검정길, 정릉길 일부 구간도로"로 하고 구간도로는 "용비교-양화대교북단-동교동삼거리-홍은사거리-세검정삼거리-북악터널-길음교-월

곡사거리"로 한다.

○"나. 부도심권"을 삭제한다.

2. 예외규정의 관호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를 삭제하고, 가호, 나호를 통합하여 "가. 긴급자동차,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로 하고 다호는 삭제한다.

3. "정기노선 화물자동차"를 삭제한다.

<별표 제2호>

(제2조 관련)

제목 중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삭제한다.

1. 자전거, 손수레 제한도로 중

○"퇴계로, 소공로, 청계고가로, 삼일로, 홍인문로, 창경궁로, 배오개길, 내자동길, 둔화문로, 훈련원로, 서소문로"를 삭제한다.

○청계천로의 "세종로139(구 동아일보)-청계6가사거리"를 "세종로139(구 동아일보)-광교사거리"로 하고, 종로의 "세종로사거리-동대문"을 "세종로사거리-종로1가 사거리"로 하고 을지로의 "시청-을지로6가사거리"를 "시청-을지로1가사거리"로 하고 남대문로의 "보신각-서울역"을 "종로1가사거리-남대문로4가(남대문)"로 하고, 을곡로의 "동십자각-동대문"을 "동십자각-안국로터리"로 하고, 사직로의 "동십자각-독립문"을 "동십자각-사직터널"로 하고, 세문안길의 "세종로사거리-서대문사거리"를 "세종로사거리-정동입구"로 한다.

가. 예외규정 중 제(4)항의 관호내 도로 "(세종로, 태평로, 소공로 제외)"를 삭제한다.

2.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제한 도로"는 삭제한다.

<별표 제3호>

(제3조 관련)



제국 중 "5차선이상 도로"를 "5차로이상 도로"로 하고 도표내 도로난과 차선구분 난 중 "차선"을 "차로"로 한다.

○ "편도 5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 난 중

·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그 밖의 건설기계"는 "그 밖의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편도 6차로" "편도 7차로 이상" 통행할 수 있는 차량난 중

· 건설기계의 괄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삭제한다.

<별표 제4호> (제4조 관련)

○ 도표내 올림픽대로의 승합, 화물·특수,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제한속도 최저 "30km/h"를 "40km/h"로 한다.

○ 도표내 건설기계의 괄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삭제한다.

○ 도표내 도로명 중 "서울시 공고에 의거 가로명이 지정된 편도3차선 이상도로"를 "편도3차로 이상도로"로 하고 "서울시 공고에 의거 가로명이 지정되어 있는 편도2차선이하도로와 가로명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는 "편도 2차로 이하도로"로 한다.

○ 자동차 전용도로 중 올림픽대로, 노들길(이하생략)의 "가로명"과 "구간"으로 분류하고, "도시고속도로(용비교동단-한강철교북단, 망원동 468-1(성산대교북단)-홍은동 202-5앞(스위스그랜드호텔))"을 추가한다.

○ 남부순환도로 "시흥IC-오류IC"구간을 "오류IC-가리봉1동 136번지 앞 횡단로"로 한다.

○ 제물포길(목동교서단-신월IC)를 "(목동교-신월IC: 중앙4차로)"로 한다.

<별표 제5호> (제8조 관련)

- 1. 불법부착물 부착차량 운전금지 중 "가.항", "라.항"을 삭제한다.
- 2. "차량고장시 조치"를 삭제한다.
- 4. "승차제한"을 삭제한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사유

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95.1.5 법률 제4872호 개정, 95.7.1 시행) 및 동법시행령(95.7.1 대통령령 제 14694호, 95.7.1 시행), 시행규칙(95.7.1 내무부령 제651호, 95.7.1 시행)의 개정시행에 따라 도로교통고시 관련조항을 개정.

나. 화물자동차 통행제한 규정 중 올림픽대로, 부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하여 경제활동 증진을 도모  
다. 이면도로의 주차여전에 부합하는 주차금지 장소를 일부조정하고 기타 고시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정

2. 주요골자

- 가. "차선"을 "차로"로 변경
- 나. 화물자동차 통행제한 도로조정
  - (1) 경인로·노량진로 등 부도심권 일부도로 통행제한 해제
  - (2) 도심권 통행제한 도로 일부 조정

○ 길음교-미아삼거리를 길음교-월곡사거리 구간으로

○ 휘경사거리-전농사거리-신답사거리-성동서앞사거리-한양대앞

구간을 흥파사거리-제기사거리-  
 응봉삼거리-용비교 구간으로 완화  
 (3) 올림픽대로 구간 통행제한 완화  
 ○10분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제한시간을 07:00-  
 22:00에서 07:00-10:00로 완화  
 다. 자전거, 손수레 도심권 제한도로  
 중 일부 완화  
 라.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제한은 도로교  
 통법 제58조에 포함되어 삭제  
 마. 이면도로의 주차금지장소 조정  
 (1) 노면표시 또는 규제표지로 주차  
 를 금지한 곳을 주차금지 장소로  
 하되  
 (2) 노폭 5m이하 도로에서는 특별  
 히 주차를 허용하는 노면표시 또는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 등 주  
 차허용시설이 설치된 곳을 제외하  
 고 주차금지  
 바.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운전자 준수사항의 이륜자동차와 원  
 동기장치자전거 승차정원 독립규정  
 으로 신설  
 사. 올림픽대로 최저 제한속도를 원할  
 한 소통을 위하여 40km/h로 10km/h  
 상향 조정  
 아. 시행규칙개정으로 삽입된 규정에  
 따라 운전자 준수사항 중 일부 조항  
 삭제

**교육청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1995-94호

시의회부의안전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에 부의할 안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5. 12. 5  
 서울특별시교육감

구 분	부 의 안 전 명				
예 산 안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				
	<table border="1"> <tr> <th>회계명</th> <th>추경예산액</th> </tr> <tr> <td>교육비 특별회계</td> <td>2,126,698,473천원</td> </tr> </table>	회계명	추경예산액	교육비 특별회계	2,126,698,473천원
회계명	추경예산액				
교육비 특별회계	2,126,698,473천원				

**입찰공고**

●서울특별시구로소방서공고  
 제1995-5호  
 공사입찰공고

1. 공사명: 구로소방서 신도림파출소 신축 전기공사
2.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1995. 12. 14. 17:00 당서 소방과
3. 입찰일시 및 장소: 1995. 12. 15. 14:00 당서 회의실
4. 입찰방법: 총액입찰

5. 입찰 참가 자격: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본사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입찰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합니다.

※입찰은 상시 및 우편입찰을 병행합니다.

우편입찰은 입찰일시까지 입찰장소에 도착된 입찰서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6. 입찰보증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사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본공사의 설계액은 ₩27,709,000원입니다.

9. 입찰 예비 가격: ①27,681,290원  
 ②27,625,870원 ③27,570,450원  
 ④27,515,030원 ⑤27,487,320원  
 ⑥27,431,910원 ⑦27,376,490원  
 ⑧27,293,360원 ⑨27,237,940  
 ⑩27,182,520원

10. 기타사항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사 소방과(618-31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5. 12. 5

서울특별시 구로소방서경리관

●서울특별시구로소방서공고

제1995-6호

공사입찰공고

1. 공사명: 구로소방서 신도림파출소 신축 통신공사

2.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1995. 12. 16 13:00 당사 소방과

3. 입찰일시 및 장소: 1995. 12. 18. 14:00 당사 회의실

4. 입찰방법: 총액입찰

5. 입찰 참가 자격: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본사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입찰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합니다.

※입찰은 상시 및 우편입찰을 병행합니다.

우편입찰은 입찰일시까지 입찰장소에 도착된 입찰서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6. 입찰보증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사에 귀속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본공사의 설계액은 ₩14,069,000원입니다.

9. 입찰 예비 가격: ①14,040,860원  
 ②14,012,720원 ③13,998,650원  
 ④13,970,510원 ⑤13,942,370원  
 ⑥13,914,240원 ⑦13,886,100원  
 ⑧13,843,890원 ⑨13,829,820원  
 ⑩13,801,680원

10. 기타사항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사 소방과(618-31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5. 12. 5

서울특별시 구로소방서경리관

공 문 시 행

강북구

(901-6340~4)

문서번호 재무 43161-1597

시행일자 1995. 12. 5

수신 서울특별시청

참조 공보1담당관

제목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1.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음 물품은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전환 소요조회하니 희망기관(부서)에서는 게재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전환 요청하기 바라며,
2. 위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첨부 관리전환 물품명세서 1부

강북구청장

관리 전환 물품 명세서

(단위: 천원)

연번	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취득단가	취득연월일	상태	불용결정사유
1	3610-237	전자복사기	DT5300S	대	1	1,969	'92.6.	노후 불량	불량
2	7440-310	다기능사무기	삼보88	"	1	761	'90.12.	"	"
3	"	"	GT-2	"	1	1,615	'90.2.	"	"
4	"	"	삼보88	"	9	6,300	'90.11	"	"
5	"	"	286V	"	1	3,000	'90.11	"	"
6	"	"	TG88	조	1	1,897	'91.4.4	"	"
7	"	"	TG88	"	1	1,163	'92.4.20	"	"
8	"	"	TG286	"	1	1,262	'93.5.18	"	"
9	7430-020	전자타자기	슈퍼 7	대	1	711	'85.1.10	"	"
10	3610-237	전자복사기	FT4640	대	1	2,720	'91.7.1	"	"
11	7440-310	다기능사무기	88G	"	2	3,856	'91.7.8	"	"
12	"	"	"	"	2	3,846	'93.3.20	"	"
13	7440-204	프린터	GP-2800	"	1	1,044	'93.5.18	"	"
14	"	"	큐닉스 16600	"	1	1,000	'91.11.10	"	"

연번	분류번호	종 명	규 격	단위	수량	취득단가	취 득 연월일	상태	불용결정 사 유
15	3610-237	전자복사기	FT4830S	대	1	2,245	'91.9.1	노후 불량	불량
16		무선송수기	워키토키	조	3	490	'88.9.22	"	"
17		컴퓨터	811-657A	대	1	641	'91.10.26	"	"
18	7440-310	컴퓨터	SUPER88G	"	1	641	'87	"	"
19	"	"	TG-286	"	1	3,187	'89.6.28	"	"
20	"	"	AT-286	"	1	1,057	'90.2.20	"	"
21	7440-204	프린터	GD-2800	"	1	913	'89.6.28	"	"
22	6530-265	태아심음기	EF-500	"	1	850	'86.10.15	"	"
23	5815-347	모사전송기	COFAX -400	"	1	1,980	'89.5.2	"	"
24	3610-237	복사기	DT-5300S	"	1	2,496	'89.8.28	"	"
25	7440-300	주민등록전산 PRT		대	1	913	'89.9.5	불량	불량
26	7730-004	앰프	200W	"	1	223	'86.2.5	"	"
27	5815-347	FAX	CF400C	대	1	1,980	'89.9.5	"	"
28	4120-001	에어컨	범양201	"	1	2,929	'88.8.8	"	"
29	5815-437	FAX	CF-400C	"	1	1,980	'89.9.5	"	"
30	3610-237	복사기	FT5830S	"	1	2,772	'91.9.1	"	"
31	"	"	DT5300S	"	1	2,444	'90.12.20	"	"
32	"	"	FT5850	"	1	2,940	'91.9.1	"	"
33	"	"	DT5300S	"	1	2,440	'91.9.1	"	"
34	7440-000	다기능사부기	S-286G	"	1	3,465	'89.9.5	"	"
35	7440-204	프린터	GP-2800	"	3	2,739	'89.9.5	"	"
36	5815-347	FAX	삼성-400	"	1	1,980	'89.5.2	"	"
37	3610-237	복사기	DT5300S	"	1	2,496	'90.5.11	"	"

연번	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취득단가	취득연월일	상태	불용결정사유
38	5851-347	FAX	400CE	대	1	1,980	'89.4.25	불량	불량
39	7290-001	세탁기	4.5KG	"	1	331	'85.7.16	"	"
40	7740-310	컴퓨터	TG-286	"	1	2,113	'90.2.20	"	"
41	2310-	감염희석기	혼합·판독형	"	1	4,479	'85.8.29	"	"
42	4120-001	냉·난방기	BU8JDP	"	1	2,050		"	"
43	7440-	컴퓨터	SUPER-88	"	1	960	'89.9.5	"	"
44	7440-	"	SPC-4610	"	1	854	'93.2.6	"	"
45	6120-015	변압기주상	75KVA	개	2	1,612	'89.12	"	"
46	3610-237	복사기	FT4830S	대	1	3,182	'92.10.1	"	"
47	7440-310	다기능사무기	TGM286	조	1	1,520	'93.5.	"	"
48	"	"	동양OPC	"	1	1,372	'89.4	"	"
49	7440-310	다기능사무기	동양OPC	조	1	1,372	'89.4	불량	불량
50	7440-204	프린터	동양OPC	대	1	790	'89.4	"	"
51	7440-204	"	"	"	1	790	'90.4	"	"

인사발령

세무직 7급공무원 파견(연장)  
 발령 제656호(1995. 11. 27)  
 내무국 지방세무주사보 강필규 내무부(지방세제국 지방세정개혁기획단) 파견근무를 명함(95. 12. 1~96. 11. 30)  
 서울특별시장  
 기능직 공무원 정보

발령 제661호(1995. 12. 1)  
 인사과 지방사무보조원(타자10등급) 이태경 상수도사업본부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기능직 공무원 면직  
 발령 제660호(1995. 11. 25)  
 소방본부 지방사무보조원(필기10등급) 류인숙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지방토목원(10등급) 김복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별정직 공무원 면직**

발령 제658호(1995. 11. 25)

상수도사업본부 지방별정직7급상당(환경관리기사) 황순욱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8급 기술직 공무원 면직**

발령 제657호(1995. 11. 25)

서대문병원 지방간호서기 최연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기능직 공무원 휴직**

발령 제659호(1995. 11. 25)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10등급) 김남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원(7등급) 강춘석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조무원(검침10등급) 안상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청소년사업관 지방사무보조원(타자10등급) 안연숙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서울특별시